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 입주자 모집공고

※ 본 아파트는 입주자 홈페이지 주택공급 신청서 접수 시 입주자 및 세대별 동의사항 이외에, 아래 기재된 주택법령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 본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
- 신청조건(1세대1주택 2인 한도) 관련 전산 처리
- 기장역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준일 관련 사항
- 2인한도제 신청조건 관련 주택소유 현황 조회 및 신청자 자격 관련 사항
- 주택공급 관련 사항 내용을 주택법 및 동 법령 등에 따라 당첨되는 경우에 관련 당첨자 자격확인을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등의 일정에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될 예정임.
-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 홈페이지 접속 방법 및 정보 : 정보에 따라 당첨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을 서면 등으로 통보 및 예정됨.
- 소유제외 의 경우 제외계획 등 해당 절차에 불응 할 경우 : 정보에 따라 당첨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을 서면 등으로 통보 및 예정됨.
- 선분양 조건부 전매제한 적용 및 입주자 선정에 따라 당첨되는 경우에 관련 전매 제한 및 입주자 자격확인을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등의 일정에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될 예정임.
-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 홈페이지 접속 방법 및 정보 : 정보에 따라 당첨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을 서면 등으로 통보 및 예정됨.
- 소유제외 의 경우 제외계획 등 해당 절차에 불응 할 경우 : 정보에 따라 당첨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을 서면 등으로 통보 및 예정됨.

신청자격	일반	다태아	신혼부부	노부모부양	생애최초	노후	일반공급
청약통장	일반(6개월전 예치금) ※ 단 청약통장 및 도시형생활주택(분양), 오피스텔, 분양형호텔 제외	일반(6개월전 예치금) 지역별 연체율 예외고려 이상인 자	일반(6개월전 예치금) 지역별 연체율 예외고려 이상인 자	일반(6개월전 예치금) 지역별 연체율 예외고려 이상인 자	일반(6개월전 예치금) 지역별 연체율 예외고려 이상인 자	일반(6개월전 예치금) 이상인 자	일반(6개월전 예치금) 이상인 자
세대주 요건	–	–	–	–	–	–	필요
가점제	–	–	–	–	–	–	적용

- 1순위 : 아래조건이 비교대상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기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연체율 예외고려 이상 납입한 자
- 2순위 :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역별 연체율 예외고려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자
-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투기적 청약 방지를 위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전매제한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주택공급 관련 사항은 해당 세대주에 귀속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인천시 서구 서곶지구 내 위치하는 주택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공급 조례 제 2조 제 1항 제 2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인천시 서구 서곶지구 내 위치하는 주택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공급 조례 제 2조 제 1항 제 2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6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7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8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0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1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2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3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4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5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6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7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8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9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2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30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31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32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3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33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3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34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3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35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3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36호에 해당하는 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 56조 제2항 제3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신청이 제한됨을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본 아파트는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및 2006.05. 부산광역시 솔사랑요양원이 "이어 입주자공동체 리모델링 조합 사업"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조합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리모델링 조합 사업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자 모집 공고 일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고령자 신청자 중 입주자 모집 공고 일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고령자 신청자 중 리모델링 조합 사업 이후